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32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2. 제안이유

임산부의 산전,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양육의 질 및 다음 출산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,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양육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조항 신설(안 제5조 제6호)

4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4. 1. 23 개정되어 2025. 1. 24 시행 예정인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5조 제6호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에 ‘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·산후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’ 사업을 신설 규정함.
-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대체로 비용 지원이 대부분이고 출산 전까지의 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나, 산모의 출산 후 정신건강은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침.

※ 출처 : 질병관리청(국가 건강 정보포털)

1. 산후 우울증(Postpartum depression)

산모의 약 10%~20% 정도에서 발병되며 대개 산후 4주를 전후로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출산 후 수 일 이내 혹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개 발병 3~6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치료받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1년 넘게 지속되기도 합니다. 방치할 경우 산모 자신은 물론,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2. 산후 정신병 (Postpartum Psychosis)

산모의 0.1~0.2%에서 나타나며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원과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 수일부터 2~3주 내에 발생하여 극도의 정서불안, 분노 반응, 수면장애, 망상, 혼돈, 주의 집중력 결여 등이 나타납니다. 또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살, 영아살해라는 극단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산후 정신병 또는 조울증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거나 초산인 경우는 산후 정신병의 위험성이 높음.

-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저출산 문제에 일조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모자보건법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15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.]

제10조의5(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, 불안 등 심리적 증상(이하 “산전·산후우울증”이라 한다)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
2.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·산후우울증 관련 상담·교육
3. 산전·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
4. 그 밖에 산전·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24. 1. 2.]

[시행일: 2025. 1. 3.] 제10조의5